

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분석

Analysis on the Trends of ITU's IPR Policy

이상무(S.M. Lee)

표준시스템연구팀 선임연구원

박기식(K.S. Park)

표준시스템연구팀 책임연구원, 팀장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년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년 4차 회의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I. 서론

지난 4월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의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IPR과 관련된 주제는 제3차 TSAG 회의(1998. 9. 7 ~ 9.11) 때 이루어졌던 내용으로부터 계속되는 것으로서 크게는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인 저작권 정책의 수립 문제와 특허권 허여의 거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작성된 현존 특허정책—Statement on TSB(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Patent Policy—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TSB Patent Policy)을 보완하는 것이다.

저작권 처리 문제는 ITU에서 발행하는 일반 문서

에 대한 저작권 처리 지침과는 다른, 권고안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와 사용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것의 제3차 TSAG(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회의 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저작권과 특허권의 비교 차원에서 저작권을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특히 독일측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차별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측은 저작권의 독립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대립하여 오고 있다. 현재는 미국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저작권을 독립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특허정책의 기조에 근간을 두면서 별개로 작성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권리 처분 방식과 관련하여는 최대한 사전에 의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명서 양식을 추가하는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허정책에

<표 1> ITU 특허정책의 내용

내용 구분	항목	핵심 내용	비고
기본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의 참여자들은 지적재산권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함. 표준의 보편적 서비스 차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독점권 남용은 배제되어야 함. 표준의 달성 후 특허권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들에게 일임함. 	전문적인 지적재산권법적인 문제나 계약상의 문제를 특허정책 및 그 시행에서 다룰 수 없음.
시행지침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중인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 표준화 기구의 입장에서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한 증빙을 이룰 수는 없음.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권 공개시 특허권자의 선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권리 주장의 포기: 무상 허여 - 2.2 조건부 라이선싱: 합리적 조건(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하에서 비차별적(non-discriminatory)으로 적용 - 2.3 특허권 허여의 거절: 권고안 추진의 중단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제2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명서(Written Statement)의 제출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의 보완 작업은 이번 제4차 TSAG 회의에서 원활히 추진되어 현재는 시행 단계에 들어가 있다[1].

본 고에서는 TSAG 4차 회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기초로 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을 분석한 것으로서 몇 가지 기본적인 지식으로 필요한 배경이 되는 사항을 설명하고, 저작권 처리 문제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 정책 초안의 내용, 특허정책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보완 사항, 그리고 특허권자의 실시권 허여 의사를 밝히는 새로이 추가된 성명서 양식의 취지와 의미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 보완의 진행 방향을 소개하였다.

II. IPR 정책 논의와 관련된 배경

1. ITU 지적재산권 정책의 기본 구조

지적재산권에서 가장 대표성을 띄고 있는 것은 특허와 저작권이다. 이 둘은 같은 지적재산권이지만 특허는 산업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술분야에 속한 권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저작권은 다소 광범위한 영역으로서 일반적인 인간의 창작성을 담고 있는 모든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양자는 권리 성격상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ITU가 표준화의 추진에 있어서 상충작용을 일으키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

는 정책은 ITU-T에서 규정하고 있는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특허정책)’이다. 이 정책은 특허권의 처리방침을 기술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ITU의 작업절차 및 규정상에 ITU가 표준화의 추진상 필요하여 일반 문서에 대한 복제 및 유포 권한을 인정하는 정도로 언급하고 있을 뿐, 저작권으로 인하여 표준의 제정에 대립하여 발생하는 권리 보호와 그 사용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정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작권에 대한 처리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내용과는 별 무관한 저작권으로 인한 표준화 추진상의 문제 발생은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ITU 특허정책의 내용은 간결 명료한 것이 특색이다. 그 전체 구성 및 핵심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ITU의 특허정책은 전반부에 몇 가지 표준화 추진의 특성상 필요한 기본 원칙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표준화의 참여자들이 지적재산권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표준화 활동상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즉 법적인 내용이나 실시권 허여 등과 관련된 계약 실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일은 ITU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표준화 기구 외부의 일로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맡겨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신망의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화의 달성에 특허권의 남용으로 인한 장애는 배제

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행지침(code of practice)상의 내용은 우선 원활한 표준화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특허권을 표준화의 전 추진 과정을 통하여 최대한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인들의 노력을 전제하며, 그러한 가운데 관계된 특허권이 나타났을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처리 선택 항목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일체의 주장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특허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보상조건(on a non-discriminatory basis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하에 전세계 모든 표준의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싱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표준화와 직접적인 대립양상을 띄게 되는 것으로 자신의 권리가 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들은 문서(written statement)로써 수리된다[2-6].

2. ITU 지적재산권 정책 논의의 두 가지 포인트

현 ITU 특허정책의 시행상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시행지침상의 세 번째 선택항목인 특허권 허여 거절로 인한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권고안에 포함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처리 문제이다.

가. 특허권 허여의 거절과 관련된 문제

표준화의 추진에 있어서 제정하려는 표준에 포함되는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허여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표준의 발행은 그 표준의 사용이 곧 특허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내재된 위험성을 안고 있다. 표준화 기구들이 표준 제정의 전 과정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사전 발견에 최선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물론 소수의 경우이지만 특허권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실시권 허

여를 거절하는 의사를 표명할 때 표준화의 추진이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특허권 허여의 거절 의사가 확인될 경우 표준화 추진은 중단되며 당해 특허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방향의 회피 표준을 제정하는지 별도의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대표적 사례로서 IMT-2000 표준화를 들 수 있는데 그 표준 기술의 양대 특허권자인 유럽의 에릭슨(Ericsson)과 미국의 퀄컴(Qualcomm)이 상호간의 기술 분쟁으로 특허권 허여를 반대하여 한때 IMT-2000 표준화에 난항을 초래한 바 있었다. 그 때 ITU가 두 업체에서 주장하는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기술을 표준 제정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경고를 하였으며, CDMA 기술 보유업체들 간의 협의 활동 등을 통하여 분쟁이 타결됨으로써 특허권을 허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 사건은 특허권 분쟁이 표준화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현상을 보여준 일례라 할 수 있다[7].

이러한 특허권 허여 거절에 대한 대비책으로 ITU TSAG 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특허권과 표준의 기본적인 특성상 직접적으로 대립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특허정책의 기초를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으며, ITU의 작업절차와 규정의 실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특허정책에 대한 안내지침(guidelines)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고, 특허권 허여 의사의 사전 확인 및 확증을 강화하기 위한 성명서 제출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저작권 처리 문제

ITU 지적재산권 정책의 기본 구조에서 언급하였듯이 ITU의 권고안 제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에 대한 처리 지침은 현존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기술적인 성격이 아니고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성격을 갖고 있어 통신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보통의 절차상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여겨지는 않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은 특히 speech coding과 관련된 권고안의 내용에 그 기술 명세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구현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자 표준의 제안 시 컴퓨터프로그램 소스코드를 함께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단이 되어 결국 권고안 상에 공개하게 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방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건이었다.

3차 TSAG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하여 특히 논란이 되었던 것은 저작권과 특허권의 차별성을 근거로 한 저작권의 귀속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TSAG 회의 참여자 중 특히 독일측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은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처럼 표준화 기구가 일괄 이양받아 표준의 이용한도에서는 무료(free of charge) 보급 차원에서 표준에 포함되도록 하여 표준의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국측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도 창작자의 특별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서 상당한 개발 비용이 투자되며 특허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자유의사와 가치가 있으므로 저작권의 개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론함으로써 논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재 TSAG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미국측의 주장을 기초로 하여 별도의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8].

III. 제3차 TSAG 회의에서의 주요 결정사항

1. 저작권 정책 초안의 작성

1998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제3차 TSAG 회의 결과에 따라 특허정책과는 별도의, 그러나 특허정책의 기초에 맞춰진 저작권 정책 초안이 작성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ITU 저작권 정책 초안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제목	• Proposed TSB Software Copyright Policy – Licensing and Declaration
1	• 관련 저작권에 대한 증빙의 불가능 • 저작권 정보의 공개 • 저작권 처리 항목 선택에 대한 성명 처리
-	• 저작권 처리를 위한 선택 항목
2.1	• 저작권을 ITU에 이양; ITU가 무료의 사용권을 허용
2.2	• 저작권자가 무상 허여를 함.
2.3	• 합리적이고 비배타적인 조건하의 라이선싱 교섭
2.4	• 저작권의 제공을 용인치 않음.
3	• 저작권자는 기본적으로 ITU에게 무상의 사용권을 부여함. • 시험과 평가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인정함.

이 저작권 정책 초안은 추가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좀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보안될 취지로 작성된 것이다.

1항은 특허정책의 시행지침 제1항과 유사하다.

저작권 처리를 위한 선택 항목에서 독일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ITU로의 저작권 이양을 두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세 가지 항목은 특허정책의 선택항목과 유사한 것이다. 저작권의 제공을 용인치 않을 경우, 당해 저작물(소프트웨어)이 권고안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3항의 규정에서 ITU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형으로는 복제(reproduce), 발행(publish), 판매(sell), 배포(distribute)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용자든 시험(test)과 평가(evaluation)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의 사용권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 특허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수립

ITU 특허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내지침격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98년 1월(14일~21일)에 열린 제2차 TSAG 회의 때였다. 이 회의에서 ITU 특허정책의 특허권 처리에 대한 선택 항목 중 실시권 허용 거절을 중심으로 여러 가

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특허정책의 최초 수립 당시로부터 그 명맥이 이어져 내려 왔듯이 특허정책의 내용을 바꿔야 할 아무런 실질적 타당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허정책 자체에 대한 내용 수정은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원활한 특허정책 수행을 위한 이해를 돕고 구체적인 시행지침의 목적과 적용방식 등을 설명하여 최대한 표준화의 추진과 특허권과의 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로서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나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등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모본으로 삼아 특허정책에 대한 Ad-hoc 그룹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시행 가이드라인의 작성을 추진하기로 동의하였다. 그 후 제3차 TSAG 회의에서 IBM이 그 초안을 제출하여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허정책 운용 가이드라인의 내용항목 구성은 <표 3>과 같다.

가이드라인의 전반부(1항-2항)는 일반적인 배경이 되는 사항으로서 ITU 특허정책의 목적과 정책 수립의 역사적인 배경, 기본적인 정책의 적용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 4절의 공개(disclosure)가 의미하는 것은 특허권 공개의 시점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표준화 추진 아이템의 착수로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한 최우선 공개가 원칙이지만 표준화 작업절차의 과정을 권고초안(draft Recommendation)의 작성단계와 1차 초안의 완료단계(이 때까지는 권고초안의 내용 변경 가능성이 있는 상태임), 그리고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최종 초안의 3단계로 보고, 이 중 권고초안의 내용 변경 소지가 있는 제1단계와 2단계에는 특허권 포함 여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고초안의 기술적 내용이 결정되어 제출본이 완성된 승인단계에서는 특허권의 포함 여부를 명백히 판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때 관련된 특허권의 공개는 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주요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표준화에 장애가 발생

<표 3> ITU 특허정책 운용 가이드라인(초안)의 항목 구성

항목	부항목	제목
제목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ITU Patent Policy
1	-	Purpose
2	-	Background
	2.1	Past History
	2.2	Current Situation
	2.3	Maintaining the Principle
	2.4	Disclosure
3	-	Approval for new and revised Recommendations
	3.1	Prerequisites
	3.2	Consultation
	3.3	Notification
4	-	Work Methods for Study Groups
	4.1	Conduct of Meetings
	4.2	Submission of Contributions
5	-	ITU Patent Statement Database
	5.1	Database Information
	5.2	Patent Declarations
6	-	Discovery of patents after publication
Appendix I	-	Statement on TSB patent policy
Appendix II	-	Forms for Patent Statements

하지 않도록 표준화의 전 추진 과정을 통하여 관련된 특허정보의 공개 및 발견에 치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기 사항으로서 관련 특허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권 처리 의사로서 수립된 성명서 데이터베이스(5. ITU Patent Statement Database)를 구축하여 운영하므로 표준의 사용 관계인들이 참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특허정책 전문과 특허성명서 양식이 첨부된다[9, 10].

3. 특허성명서 제출방식의 보강

이 문제 역시 특허권의 대립 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방지하고 특허정보의 공개를 강화한다는 시책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ITU 특허정책의 시행지침 제3항에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특허권자의 성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ITU-T의 WTSC(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ference) '96에서 채택한 결의안 제1호(Resolution 1)의 8.3.8항에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표준화된 서식의 필요성이 이미 제2차 TSAG 회의에서 제기되어 3차 TSAG 회의에서는 그 양식 제안 및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98년 12월 TSB Circular 156에서 '99년 1월부터 시행되도록 할 것을 공표하였다[11].

성명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하나는 기본적인 것으로서 개별 권고안에 대한 성명서이고 또 하나는 표준의 제안시 모든 기고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선언을 해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의 것은 개별 권고안의 작성에 들어가기 전단계에서부터 미리 표준 제안자의 특허권 허여 의사를 확인해 두고 그 후에 별도의 의사 표명이 없는 한은 표준의 제정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아울러 표준의 제안자 입장에서 다수의 표준 제안에 대하여 동일한 특허권 처리 의사를 개별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통합적으로 표명해 둘 수 있는 효과를 갖도록 한 것이다.

포괄양식의 제출은 선택적인 사항이며 아직 권고안의 초안 작성 전이기 때문에 관련 특허정보나 권고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므로 그 항목들은 제외된다. 그리고 라이선싱 유형의 선택에서 허여 거절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배제되어 있다[12, 13].

IV. 제4차 TSAG 회의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및 진행동향

1. 주요 논의내용

ITU 특허정책의 보완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결국 ① 저작권 정책의 수립, ② 특허정책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완성, ③ 특허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서 양식의 적용 등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이 중 가이드라인의 완성이나 특허성명 양식의 적용은 크게 어려운 문제없이 진행되어 현재는 시행에 들어

가 있는 상태이다. 저작권 정책 수립의 경우 논란의 소지가 많아 이번 4차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방안 수립을 위하여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저작권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측의 여러 표준화 기구들에 대한 저작권 정책 비교분석, 일본측의 저작권 정책 초안에 대한 수정 제안 등이 있어 그 내용을 소개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허성명 방식 중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던 포괄선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 내용을 설명한다.

가. 저작권 정책의 필요성과 적용 예측을 위한 검토 회의

금번 TSAG 회의에서는 저작권 정책 수립의 타당성 검토와 필요한 보안을 위하여 실제로 ITU의 표준화 추진 처리에 있어서 저작권 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시나리오의 중점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의 발생 분야인 speech coder와 관련된 SG(Study Group) 16에 적합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은 권고안의 정규 부분(normative part)으로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특히 speech coder 명세에 특정되는 것으로 ITU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독일측이 제안한 다른 기구들의 일반적인 저작권 정책과는 그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시나리오의 작성은 소프트웨어가 권고안의 정규부분으로 포함되는 상황으로 한정된다.

권고안에 포함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유형으로서 다수의 시나리오가 언급되었는데 검토를 위하여 선정된 시나리오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 ① 일반적인 성격의 것으로서 프로그램언어나 순서도(flow chart), 다이어그램 등으로 작성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 ②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구동시키기 위한 코드로서 ITU 내부 처리상의 협력 과정에서 개발되거나 현저히 수정된 소프트웨어
- ③ 역시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구동을 위한 코드로서 이번에는 ITU와는 관계없이 완전히 외부에서 개

발되어 아무런 수정 없이 포함되는 소프트웨어

- 단일 주체(legal entity)에 의한 소유
- 복수 주체에 의한 소유
 - 단일 라이선싱 교섭 주체의 존재
 - 단일 라이선싱 교섭 주체의 부재

(이 경우에 있어서 SG에 의한 일부의 수정이 가해진 경우 수정의 정도에 따라 두 번째 시나리오로 전환될 수 있다.)

- ④ 표준화의 목적으로 특정 주체에 의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가 아닌 보편화된 상업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도 가장 집중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저작권 주체의 복잡성을 갖게 되는 세 번째의 경우이다. 이상의 검토 회의에 따른 결과적인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이하의 ‘2. 변화 내용’에서 설명한다[14].

나. 독일측의 저작권 정책 비교분석

이번 회의에서 독일측은 사실 표준화 기구를 포함하여 다수의 표준화 기구들의 저작권에 대한 처리 방침을 비교한 자료를 제시하여 여전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U의 저작권 정책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였다.

비교분석 자료의 제시와 함께 독일측은 저작권 정책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태든 모든 저작권은 표준화 기구로 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은 현재의 ITU 저작권에 대한 처리 방향과는 대치되는 일이며 ITU만이 유일한 방식을 취하므로 잘못된 저작권 정책을 수립할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ITU는 다른 표준화 기구들이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식의 저작권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5].

다. 저작권 정책 초안에 대한 일본측의 제의 내용

일본의 기업그룹 — NTT, Fujitsu, Hitachi, KDD, NEC, OKI — 에서는 저작권 정책 초안의 시행시 예

상될 수 있는 세부적인 문제들과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저작권 정책 초안의 조정 내용을 제시하였다.

일본측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 초안에서 저작권 처리를 위한 네 가지 선택 항목 중 주로 2.1항과 2.3항에 관한 것이다(<표 2> 참조).

2.1항에 대해서는 먼저 저작권의 사용 유형을 세부적으로 규명할 것을 지적하였다. 사실상의 사용 유형에는 순수한 프로그램 동작 목적의 사용(use) 뿐 만이 아니라 개작(modify)을 한다든가 판매(sell)를 한다든가 서브라이선싱(sub-licensing)을 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정책 상에서 단순히 사용이라고만 해서는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ITU로의 권리 이양의 범위에 있어서 전면 이양으로 본다면 ITU가 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계약 처리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완전한 권리 양도로 한다면 원저작자로서는 권리를 양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활용 권한이 없게 되는 것임을 우려하였다. 아울러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ITU에 양도할 때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괜히 모호한 개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2.1항은 삭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라이선싱에 있어서 필요한 사안은 저작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유형의 권리를 어떻게 라이선스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어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3항에 관하여는 결국 권고안 상에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제공함으로써 인한 부담 문제, 즉 표준의 이용시 특허권에 대하여 저작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표준의 이용 비용을 가중시키는 영향이 있어 반드시 소스코드를 권고안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군다나 저작권의 경우 저작자의 복잡성이 강하여 이용 허가를 받기가 매우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지적 사항으로서 표준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오류(bug)가 발생했을 시 원저작자의 보정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과 이에 관여된 ITU 입장에서 책임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저작권 정책 초안에서 먼저 모든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2.1항과 2.3항은 삭제하도록 하며, 무상 허여인 2.2항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권고안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권리 주장의 포기(waive) 혹은 무상 라이선스(free license)를 할 것과 제공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하나의 구현 예로서 참조용으로 배포된다는 것을 기술토록 제안하였다(<표 2> 참조) [16].

라. 포괄선언의 의미에 대한 해석

1998년 12월 TSB Circular 156에 의하여 특허성명서 양식의 공식적인 시행이 발표된 후에도 기존 3차 TSAG 회의의 참여자들 사이에서 특허 포괄선언 양식에 대한 정확한 적용 의미에 대한 의문점들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포괄선언 양식이 오직 기고서(contributions)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고서와 승인된 권고안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한 번 이 선언을 하고 나면 연구반(study group) 회의의 개시 시에 의장이 요청하는 특허공개 선언에 대하여 더 이상의 반응을 할 책임이 없는 것인지 등이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독일의 SIEMENS에서 지난 3차 TSAG 회의에서 정리한 내용과 TSB Circular 156에서 기술한 내용이 서로 문구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교정할 것을 지적하면서 정리된 의미를 제시하였다[21]. 또한 이에 대한 해설을 특허정책 운용가이드라인에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두 가지 선언 양식이 의도하는 바는 ‘특허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의 경우는 관련된 특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승인된 권고안에 대한 것이고, ‘포괄 특허성명(General Patent Statement)’의 경우는 선언 당시의 시점으로 볼 때 단지 기고서—COM Documents, White Contribution, Delayed Contribution, Temporary Document, Contributions to Rapporteurs meeting 등—에 대하여 선언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포괄특허성명이 개별적인 특허성

명 및 라이선싱 선언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력에 있어서는 포괄특허성명에서 선언된 의사는 권고안의 승인 시점에서 각 개별 특허성명을 취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개별 특허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이 포괄특허성명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우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포괄특허성명은 ITU 회원들이 ITU-T 특허정책을 따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괄특허성명은 통상적으로 자신이 기고한 표준 제안이 권고안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때, 의도를 바꿔서 특허권 허여 거절 의사를 표명하는 특허성명 및 라이선싱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사전에 확인하여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할 것이다.

2. 주요 변화내용

ITU 특허정책에 대한 세 가지 보완책 동향의 요점은 특허정책 운용 가이드라인은 보완 작성이 완료되어 특허권 처리 선언 양식과 함께 시행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의 경우 계속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차 TSAG 회의로부터 이어진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이번 4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처리 및 추진된 변화 내용과 동향을 설명한다.

가. 2차 저작권 정책 초안의 작성

여러 가지 논의에 따라 결과적으로 첫번째 저작권 정책 초안(first draft)에 대한 수정 사항의 요지는 기본적으로 특허정책의 내용과 조율시킨다는 구도에서 먼저 시행지침 전에 서론부(introductory material)를 추가하도록 하였으며 저작권자의 라이선싱 선택항목 중 2.1항을 기존의 ITU로의 권리 이양 조건 외에 일본측의 제안을 반영하여 권리 주장의 포기 에 해당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2.1A와 2.1B로 분리하여 작성하였으며, 저작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연의 권리는 유지한 상태에서 조치됨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표 2> 참조).

변경 내용의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서론부에서,
 - 본 정책은 저작권 정책 검토협의 중 세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로 한정됨을 표시
 - 저작권 정책 수립의 배경을 기술
 - 표준화 추진 절차상에서 필요한 일반적인 문서에 관한 저작권 방침을 기술
- 시행지침의
 - 제2항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유지를 명시하였으며,
 - 2.1A에서는 기존의 ITU로의 권리 이양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 2.1B에서 어떠한 특정 조건이나 로열티의 요구없이 해당 권고안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무상 접근이 가능토록 일체의 저작권 주장을 포기함을 기재
 - 2.2절에서 일본측 제안에 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 표준의 구현 범위 내에서의 허용, 비차별성(non-discriminatory) 원칙, 권리 허여에 대한 상호주의원칙(reciprocity)

아울러 저작권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안되었다.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첫 번째 초안이며 새로운 논의와 제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저작권 정책의 두 번째 초안(Second Draft)에 대하여 더욱 요구되는 사항과 향후 진행 방향은 ITU 참여회원 개별 지역 전문가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다음 TSAG 회의 전까지 통신 수단에 의한 협의를 통하여 이 두 번째 초안에 대한 내용의 개선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시나리오 3의 국면을 수용하도록 추가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나. 특허정책 가이드라인의 보완

특허정책 가이드라인의 내용 보완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우선 두 가지 새로운 특허성명서 양식의 시행으로 인한 관련 조항의 추가 및 필요한 부분에 그 의미와 적용을 위한 설명을 기재하였다는 것이다.

1) 항목구성의 추가

- 두 번째 항목 'Background'에서 2.5절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을 추가함.
- 가이드라인의 다섯 번째 항목의 부항목으로서 연락 정보(5.3 Contact information)를 추가함.
- Appendix II의 양식을 'Patent Statements and Licensing Declaration'으로 함.
- Appendix III를 추가: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2) 내용의 변경사항

- 1. 목적(purpose) 부분의 후단에 다음의 문장을 추가함:
“이 가이드라인은 다만 ITU의 특허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작성된 것이며 근본 원칙은 어디까지나 ITU의 특허정책에 따른다.”
- 2.4절 공개(disclosure)의 부분에 있어서 후반부의 문장을 삭제하고 관련 특허정보의 조기 공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시행 방법으로서 권고초안의 윤곽이 확실시 되는 승인단계에서의 특허정보 공개 독려를 기고서 제출시부터로 앞당기는 취지의 문구로 대체함.
- 추가된 2.5절에 포괄특허성명의 용도와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음. 또한 여기서 특허 성명은 다른 당사자가 같은 맥락의 취지에서 ITU 특허정책 상의 선언 유형인 2.1항과 2.2항에 따른 선언을 하는 경우에 서로 제공되는 것이며 특허 선언을 거절하는 경우, 즉 2.3항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을 기술하고 있음.
- 제3항 신규 및 개정 권고안의 승인 중 3.1절 선제 조건(prerequisites)에서 문구 조정: 역시 신규 특허성명 양식의 적용에 맞도록 기존의 단순 기재 항목만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 양식의 이용 목적과 활용 방법을 기술함.
- 5절 ITU PATENT STATEMENTS DATA-

BASE의 서두에서 ITU의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추가함. 그 URL은 다음과 같음:

<http://www.itu.int/ITU-Databases/TSBPatent/forITU-T>

<http://www.itu.int/bredh/patentsforITU-R>

- 추가된 연락처정보(contact information)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허성명 양식의 작성시 연락처 정보의 유동에 따른 권리자와의 접촉 곤란이 없도록 가급적 변동이 없는 정보를 우선으로 최대한 여러가지 연락 수단을 기재하고 복합적 권리자의 경우 일관성 있고 한 번의 접촉으로 대표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요구함.

이렇게 보완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7일 TSB Circular 200(COM9/FC)을 통하여 공표되어 현재는 시행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17, 18].

V. 결론

그동안의 TSAG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ITU 특허정책에 대한 변화 동향의 원인과 요지는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특허정책의 시행지침 중 특허권자가 2.3항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허여 거절을 선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권고안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안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유지하여 왔던 것처럼 ITU 특허정책의 “원칙유지, 절차개선” 기조를 취하고 그 구체적인 실무 방침으로서 대표적으로 선정된 것이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포괄특허성명을 포함한 표준화된 특허권 처리 선언(licensing declaration)양식의 제정이며 이 두 가지는 현재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주요한 사안은 저작권 처리 문제로서 아직도 논의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특허정책과 유사한, 그러나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의 수립을 추

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 정책 수립상에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 라이선싱 방식의 적용시 지적재산권 사용 비용의 증가에 따른 표준의 적용 부담과 복합적인 권리자와의 계약 처리 사안 등 실제의 구현에 있어서 나타나는 장애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절충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 정책 수립의 경우 현실 적용의 수준에 다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ITU에서의 저작권 정책 수립이 표준화의 추진에 잘 조화되도록 효과를 나타내어 성공된다면 아직까지 다른 표준화기구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립적인 정책 활용으로서 모범적 선행이 될 수도 있는 활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1] TSB Circular 200 COM9/FC,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SB Patent Policy, ITU, 1999. 7. 7.
- [2] Ki-Shik Park, Young-Tae Kim, Hong Sohn, “Disputes over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 *ETRI Journal*, Vol. 20, No. 1, 1998. 3., pp. 74 - 95.
- [3] 박기식, 이선화, “정보통신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논쟁,” *Telecommunications Review*, Vol. 6, No. 3, SK Telecom, 1996. 5-6, pp. 350 - 361.
- [4]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 주요 표준화 기구의 IPR 정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4. 5.
- [5] 이선화, ITU의 IPR 정책, Standardization Systems Study,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4. 6., pp. 1 - 11
- [6] 한국통신기술협회 기획분과위원회 지적재산권연구위원회, 주요 표준화기구의 지적재산권 정책 자료집, 1994. 8., pp. 6-18.
- [7] 박진현, 서무정, “IMT-2000의 지적재산권(IPR) 분쟁과 의미 - 켈컴과 에릭슨의 IPR 분쟁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 Vol. 11, No.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4. 16., pp. 23-39.
- [8] 이상무, 박기식, “ITU의 권고안 제정과 관련된 저작권 처리에 관한 논의,” *주간기술동향*, 통권891(99-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4. 14., pp. 22 - 31.
- [9] Director's ad hoc Group on IPR,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TU Patent Policy,” Temporary Document 95, the 4th ITU-T TSAG meeting, Geneva, 1999. 4.



- [10] United States of America, "TSB Patent Policy Implementation Guidelines," Delayed Contribution 57, *the 4th ITU-T TSAG meeting*, Geneva, 1999. 4.
- [11] ITU-T Resolutions and A-Series Recommendations (ITU 전기통신표준화 분야의 결의안 및 A-시리즈 권고안, Geneva, 1996), ITU 전기통신표준화 관련 규정집, 표준연구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6., pp. 1 - 24.
- [12]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Report of the 3rd Meeting(Geneva, 7-11 September 1998), TSAG-R 16, ITU-T TSAG, 1998. 10.
- [13] *TSB Circular 156,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Bureau*, ITU, Geneva, 1998. 12. 11.
- [14] Germany, "Information about the IPR Policies of Distinct Standardization Bodies and Fora," Delayed Contribution 74, *the 4th ITU-T TSAG meeting*, Geneva, 1999. 4.
- [15] NTT, Fujitsu, Hitachi, KDD, NEC, OKI, "Proposal on Revisions of Draft TSB Software Copyright Policy," Delayed Contribution 54, *the 4th ITU-T TSAG meeting*, Geneva, 1999. 4.
- [16] SIEMENS, "Difference in Formulation in TSB Circular 156 about 'General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and of TSAG Report 16," Delayed Contribution 73, *the 4th ITU-T TSAG meeting*, Geneva, 1999. 4.
- [17] Pirelli Cavi e Sistemi S.p.A., *Proposed Modifications of the 'Patent Statement and Licensing Declaration' included in TSB Circular 156 and in TSB Circular 200(COM9/FC)*, TSAG-7-E, ITU, 1999. 8.
- [18]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Report of the 2nd Meeting(Geneva, 14-21 January 1998), TSAG-R 9, ITU-T TSAG, 1998. 2.